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제11조(성능점검)에 관한 의견 제출

첫째. 기계설비법 제21조 1항에 따르면 (성능점검과 관련된 업무를 하려는 자는 자본금, 기술인력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금회 개정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고시는 기계설비법에 반하는 사항임을 알립니다.

둘째. 금회 개정안의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성능점검) 2항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고급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을 고용하고, 영 별표 7 제3호에 따른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내용은 관리주체가 직접 성능점검을 실시 할 수 있게 허용 할 경우, 공동주택 및 건축물 등의 위탁관리업체가 관리주체의 자격으로 개정안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키고, 직접 성능점검을 실시하게 될 것이며, 관리주체의 직접 점검은 객관적인 점검 보다 형식적인 점검으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기술적인 전문성 없이 단순점검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당초의 신뢰성을 잃게 되며, 기계설비법령을 적용 받는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제11조(성능점검)에 관한 개정안을 반대 합니다.